

『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4월 3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5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5월 13일

제17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김 석 동

나. 제안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·정비하여 건전한 도시행정을 실현하고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개발행위 허가시 경사도 산정방법을 현실화 함(안 제22조)

-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방법 신설(안 제22조의2)
- 부동산 투기 및 사기분양 방지를 위한 토지분할 제한(안 제26조)
- 녹지지역 및 비 도시지역내 개발행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건축물 확대(안 제 29조)
-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신설(안 제69조)
-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등 규정 신설(안 제69조의3)
-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시기 규정(안 제75조)
- 태양광발전시설 등 신·재생에너지 시설의 주거지역 설치 허용 (별표 3 ~ 별표 6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 - 「건축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입법예고 : 2013. 3. 13 ~ 4. 2(20일간)(의견없음)
- 구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.(2013.4.26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희 철

□ 본 『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』은,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본 조례에 적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

○ 그 주요 개정된 내용으로는,

- 개발행위 허가 시 경사도 산정에 있어 가중평균과 최대 경사도를 전체 경사도로 적용한 것과(P. 12참고)
-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운영 방법 신설(안 제22조의2)
- 부동산 투기 및 사기분양 방지를 위한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토지 분할 제한(안 제26조)
-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내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건축물(축사, 농사용 창고 등 660㎡이내) 확대(안 제29조)
-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2년 임기, 3회 이상 제한의 연임제한 규정 신설(안 제69조) 및 위원 위촉 후 해제 규정 신설과 각계각층의 전문가 위촉 범위 확대
-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신·재생에너지 시설의 주거지역(1종~3종 주거지역, 준주거지역) 설치허용
- 기타 띄워 쓰기, 조항 변경,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1, 2종 구분 폐지, 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사항 삭제 등임.

□ 위와 같이 상위법에서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건전한 도시행정을 실현하고,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개정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

-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 명단을 공개할 것.
-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은 공모 및 외부추천방식으로 위촉(안 제69조 제4항 제3호)
-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시한을 단축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신장할 것 등을 향후 검토.(안 제75조 제2항)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